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1449

2020년 4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4월 3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(2020년 4월 2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)

가. 제안이유

- 현재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서남권(양천구, 구로구 등)의 주민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민간 위탁·운영 중에 있으나, '20년 1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소음대책 지역(13.1km²)에서 인근지역(13.5km²)까지 확대됨에 따라
-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

구로구에 주민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며

○ 공항소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□ 사업 개요

- 사업명: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
- 위탁기간: 2년 6개월('20년 7월~'22년 12월)
- 수탁기관 선정방법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□ 주요 위탁사무

-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
- 공항소음 관련 각종 민원서류 접수대행 및 상담
- 피해주민 소통 및 교육사업
- □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(조직담당관-4000, '20.3.24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

「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: '20년 120백만원('21년 150백만원)

다. 합의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가. 개요

○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계획(안)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민간위탁 조례") 제4조의3제1항¹)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 및 제6조>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4.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- 8.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
- 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¹⁾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검토의견

□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

서울시는 2020년 1월에 소음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센터와 분소간의 업무분담 등 효율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, 사업추진이 지역된 구로구 지원사업의 방향 설정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.

기존에 운영 중인 양천구 주민지원센터를 필두로 총 2개 센터와 3개 분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

- 기존의 양천구 주민지원센터는 현재 업무에 분소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고척동 주민지원센터는 지원범위가 고척동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주민민원 상담,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소음교육 업무로 한정함
- 분소는 피해주민 민원 상담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교육 홍보사업 및 간담회 개최는 총괄기관인 양천구 주민지원센터에서 수행하되 분소에서 업무를 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분소는 구별로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 나 구로동의 경우 주민 갈등 문제로 인해 별도의 분소를 설치함

<주민지원센터와 분소의 설치 지역, 지원내용 및 세부 사업>

구분	지 역	지원내용	세부사업		
주민 지원 센터	양천구	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	- 주민민원 상담, 서류 대행업무 - 소음측정 및 연구업무 - 지역주민 소음교육 및 홍보행사 업무 - 강서구, 금천구, 구로구(구로동) 분소 관리 총괄		
	구로구 (고척동)		- 피해주민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 -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및 소음교육 업무		
분소	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(구로동)	분소 개설 및 운영	- 피해주민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 - 피해주민 간담회 개최 등 의견 수렴		

□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

- 본 동의안은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을 공항소음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
- ㅇ 이는 "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"와 "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"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

□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. 추진근거 및 필요성. 위탁사무 내용.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 하고 있음.
-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, 지원시설 및 위치도 등의 개요 부분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의 주민지원사업이 예산지원형 사무형 위탁2) 형태를 취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짐

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>

제4조의4(민간위탁 동의안)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위탁사무 내용
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5. 민간위탁기간

6. 수탁자 선정방식
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²⁾ 민간위탁의 유형은 예산지원형(시설형 위탁, 사무형 위탁)과 수익창출형으로 구분됨

□ 민간위탁 추진 절차

- 본 위탁사업은 2020년 2월에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3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, 운영 규정 및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사항을 단서 조건으로 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 바 있음
- 다만,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 따르면 고척동 주민지원
 센터의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, 이는 의회의 동의를
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어긋나는 행위임.

<2020년 제2차 민간위탁 운용평가위원회 심의결과>

부서명	위탁사무명	유형	위탁기간	심의결과	심의사유
생활환경과	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	사무/ 신규(공모)	2년6개월	│ 석성	(권고) 운영 규정 및 향후 운영계획 마련 필요

□ 검토 의견

-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및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, 민간위탁 추진 절차 상 의회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서울시는 지역별로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설치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객관적인 설치 기준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 번 호

1449

제출년월일: 2020년 4월 3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김포공항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서남권(양천,구로 등) 주민 지원을 위한 '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'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나, '20. 1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소음대책지역 (13.1㎞)에서 인근 지역(13.5㎞)까지 확대되었음

※ 소음대책지역 : 항공소음 75웨클 이상 소음대책 인근지역 : 항공소음 70웨클~75웨클 미만

- 나. 이에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로구에 주민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며
- 다. 공항소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 -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 -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

- 필요성 및 기대효과
 - '20년 1월 「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으로 지원사업 대상이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인근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민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 사업확대가 불가피함
 - 구로구는 양천구 다음으로 소음피해가 큰 지역임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인 고척동에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항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함

나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사업
- 위탁기간 : 2년 6개월('20.7월~'22.12월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- 사 업 비 : '20년 120백만원 ※ '21년 150백만원

다. 주요 위탁사무

-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
- 공항소음 관련 각종 민원서류 접수대행 및 상담
- 피해주민 소통·교육사업
- **라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** : 적정(조직담당관-4000, '20.3.24.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
-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항시설관리자(이하 "시설관리자"라 한다)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

제4조(주민지원사업)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.

- 1.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- 2.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3.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주민지원사업의 위탁)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'20년 120백만원('21년 예산 150백만원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 김효형 (☎ 2133-3723)

2020년 민간위탁사업 소요예산 산출근거

○ 사 업 명 :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

○ 위탁기간 : 2020. 07. 01. ~ 2020. 12. 31.(6개월)

(단위 : 원)

	구	분	금 액	구성비(%)	비고	
①인건비	기 본 급		26,697,642	22.2%	2명(7급 5호봉 기준 1명, 서울형 생활임금 1명)	
	제수당	연장근로수당	2,123,865	1.8%	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	
		휴일근로수당	1,699,091	1.4%	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	
		정액급식비	1,560,000	1.3%	공무원 수당규정 준용	
	상 여 금		2,669,764	2.2%	공무원 수당규정 준용	
	퇴직급여충당금		3,025,864	2.4%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	
비	사회보험료	국민건강보험료	2,625,456	2.2%	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	
		노인장기요양보험료	269,110	0.2%	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	
		국민연금보험료	3,542,594	2.9%	국민연금법 제88조	
	된 당	산재보험료	384,889	0.3%	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	
		고용보험료	381,258	0.3%	고용보험법 제6조	
	소 계		44,816,617	37.2%		
	회 의 비		3,212,400	2.7%	자문회의 등	
	임 차 료		4,980,000	4.1%	주민지원센터 사무실	
	전화통신비		633,600	0.5%	전화요금,인터넷 등	
	유 인 물 비		_	0.0%		
③ 处设°归	소 모 품 비		365,910	0.3%	복사용지 등	
ෂි	수선유지비		1,348,000	1.1%	센터무인경비 등	
	공공요금 및 제세		1,156,220	1.0%	전기료, 각종 보험 등	
	기타운영비		7,029,095	5.8%	문구류, 컴퓨터 프로그램 구매(한글, MS) 등	
	자산취득비		6,150,950	5.1%	복합기, 컴퓨터 등	
	소계		24,876,175	20.7%		
3	외부 간판제작(LED)		3,751,000	3.1%		
③ 환 경 개 선 비	내부 인테리어		23,767,000	19.7%		
	냉난방기(18평형)		3,223,000	2.7%		
선 비	사무실 보증금		20,000,000 50,741,000	16.6%		
,	소계			42.1%		
	위틱	- 비 총 계	120,433,792	100%		

2021년 민간위탁사업 소요예산 산출근거

○ 사 업 명 :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
 ○ 위탁기간 : 2021. 01. 01. ~ 2021. 12. 31.(12개월)

(단위 : 원)

	구	분	금 액	구성비(%)	비고
① 인 건 비	기 본 급		53,395,284	35.6%	2명(7급 5호봉 기준 1명, 서울형 생활임금 1명)
	제수당	연장근로수당	4,247,730	2.8%	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
		휴일근로수당	3,398,183	2.3%	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
		정액급식비	3,120,000	2.1%	공무원 수당규정 준용
	상 여 금		2,669,764	1.8%	공무원 수당규정 준용
	퇴직급여충당금		5,569,247	3.7%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
	사	국민건강보험료	2,625,456	1.8%	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
		노인장기요양보험료	269,110	0.2%	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
	사회보험료	국민연금보험료	3,542,594	2.4%	국민연금법 제88조
	엄료	산재보험료	708,408	0.5%	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
		고용보험료	701,725	0.5%	고용보험법 제6조
	소 계		80,247,501	53.5%	
	회 의 비		3,212,400	2.1%	자문회의 등
	임 차 료		9,960,000	6.6%	주민지원센터 사무실
	전화통신비		1,267,200	0.8%	전화요금,인터넷 등
2 3	소 모 품 비		365,910	0.2%	복사용지 등
७५५७ ०	수선유지비		2,476,000	1.7%	센터무인경비 등
",	공공요금 및 제세		2,162,420	1.4%	전기료, 각종 보험 등
	기타운영비		10,281,215	6.9%	문구류 등 사무실운영비
	소 계		29,725,145	29.8%	
③ 숙 장 표	찾아가는 공항소음 민원서비스		9,000,000	6.0%	
	공항소음 아카데미		18,000,000	12.0%	
	홍보비(리플렛, 소식지)		13,000,000	8.7%	
	소 계		40,000,000	26.7%	
위탁비 총 계			149,972,646	100%	